

## 원도급자 공기지연으로 인한 손해 하도급자 책임 없어

### 사건개요

신고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P시 소재 ○○아파트 신축공사중 설비공사(계약상공기 89년 ○월○일~90년○월)를 일금 ○○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던중 발주자와 피신고인 간에 불가연동제 적용 여부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모든 공사가 몇개월간 중단되자 부득이 본 건 공사가 거의 완성단계에서 중도타절하게 되었다.

이같은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가 계속 지연된 것을 더이상 참지못한 입주자 몇세대가 입주하여 수도물등을 사용하므로써 누수 되어 아파트 지하 변전실에 침수, 변압기가 폭발하는 등 손해가 발생되었고, 이 손해발생액을 발주자가 피신고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했다.

그러자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(잔금) 지급을 유보하고 오히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, 이에 신고인이 공사대금 잔금 ○○원 지급등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, 본 조정협의회로 이첩되어 온 사례이다.

### 양 당사자 주장 내용

#### 피신고인 측 주장

신고인이 시공한 부분인 급배수 시설

등 설비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아파트 지하실등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며, 이 누수로 인해 지하실에 있는 변전실이 침수되고 변압기가 폭발하는등 많은 손해가 발생하였는 바, 신고인은 당연히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.

#### 신고인 측 주장

발주자와 피신고인 간의 분쟁으로 모든 공사가 중단되고 본 건 공사도 마무리되지않은 상태에서 피신고인 측이 공사 현장 출입을 통제하여 부득이 현장에서 철수하게 됐다.

이런 상황 하에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중 몇 세대가 입주지연(약1년 이상)을 더이상 참지 못하고 91년 ○월경 입주하여 물을 사용하게 된 바, 전기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지하실 배수펌프를 가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물이 넘쳐 흘러 지하 변전실까지 침수되었는데 그것은 우리측 책임이 아니다.

### 처리경과

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양 당사자를 출석시켜 사실을 조사한 바, 당사자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또한 하자 발생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장검증등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본 협의회 권한 밖의 사항인 바, 양 당사자가 발주자 측과 협의하여 원만해 해결하도록 권고했다.

이에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여 피신고인이 당초 공사대금 중에서 일부 감액한 ○○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한 바, 협의회에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대로 심결, 처리했다.